

주요 현안 업무 보고

(제147회 시의회 임시회)

2004. 3. 5.



(교통국)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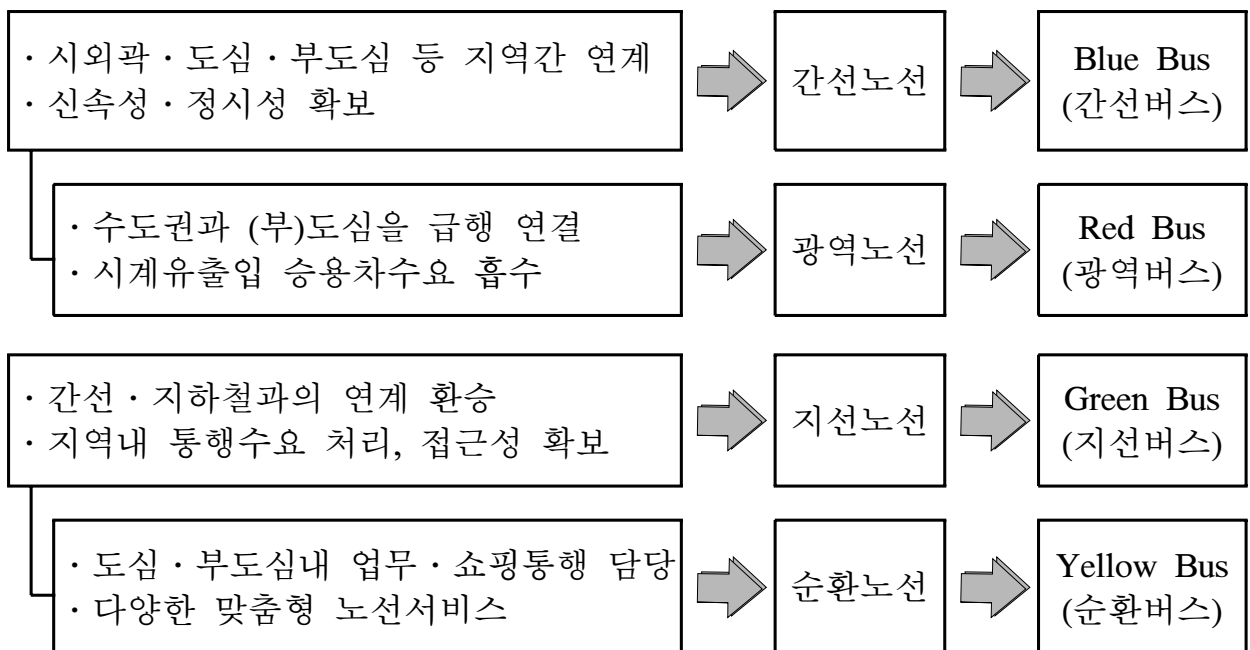
- 버스노선체계 개편 추진현황 1
- 10개 간선축 노선입찰 계획 6
- 버스체계개편관련 조례개정 추진 8
- 굴절버스 도입계획 10
-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추진보고 12
-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강화 14
- 불법자동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15
-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7
-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선사업 21

버스노선체계 개편 추진현황

- 버스노선을 간·지선체계로 재편하여 노선의 체계성·연계성 강화
- 효율적 노선운영방식 적용을 통한 버스운영의 정시성·경제성 제고
- 다양한 맞춤형노선 발굴을 통해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버스서비스 제공
- 버스노선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노선번호의 시인성 제고

□ 버스의 기능별 체계정립

○ 버스의 기능별 체계 정립



○ 간 · 지선 개편시 주요 고려사항

- 이용시민 측면 : 접근성 · 정시성 · 신속성 제고, 시민혼란 최소화
- 운행기반 측면 : 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용량, 차고지, BMS 등
- 운영효율성 측면 : 수요 대응형 노선, 버스 및 지하철간의 연계성
- 버스운영자 측면 : 버스업체의 운행 용이성 등 감안

□ 간·지선 개편결과 - 시정연 제출안

○ 버스노선 및 운행대수(업계와 최종협의 중)

버스형태	노선수	대 수
도시형	252	6,571
좌석	48	984
지역순환	64	528
계	364	8,083



버스형태	노선수	대 수
간선버스	59	2,200
지선버스	350	4,929
광역버스	43	약 750
순환버스	2 (+ α)	18 (+ α)
계	454	7,897

○ 노선별 평균운행거리 및 배차간격

버스형태	운행거리	배차간격
좌석형	57.7km	10.8분
도시형	34.1km	7.3분
지역순환	14.0km	10.0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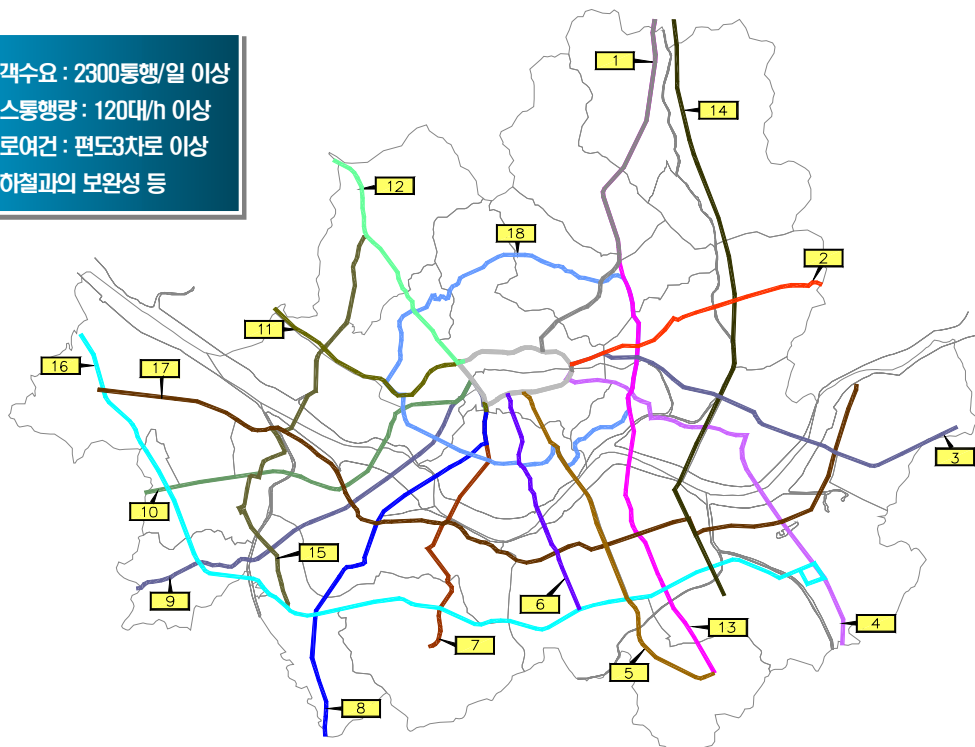


버스형태	운행거리	배차간격
간 선	49.1km	6.3분
지 선	25.5km	7.3분
평 균	29.8km	6.8분

□ 노선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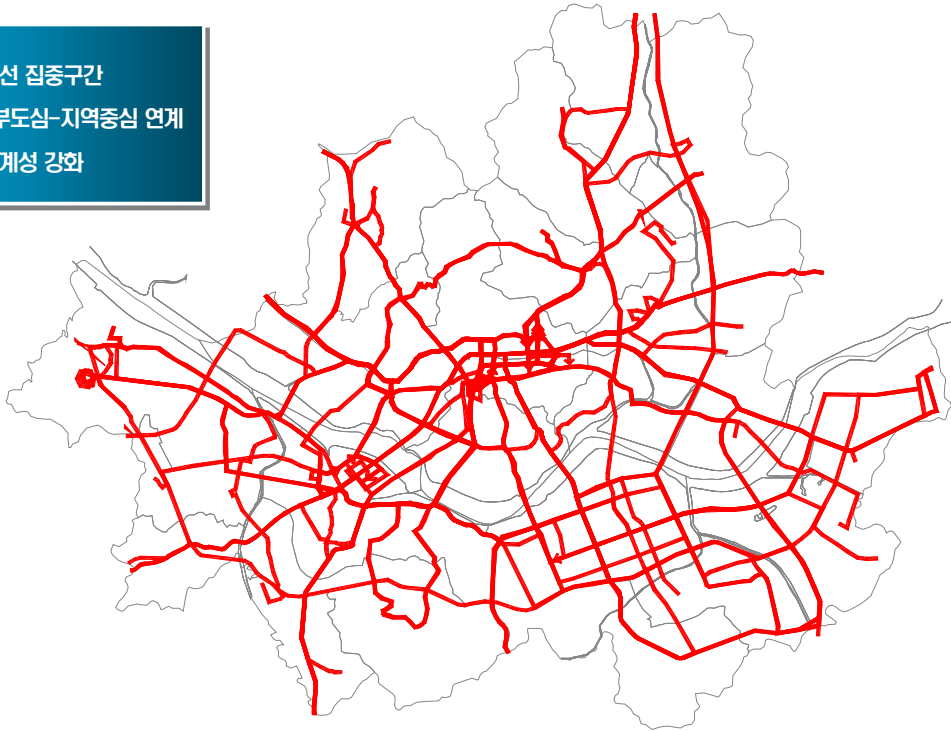
○ 18개 간선축

- 승객수요 : 2300통행/일 이상
- 버스통행량 : 120대/h 이상
- 도로여건 : 편도3차로 이상
- 지하철과의 보완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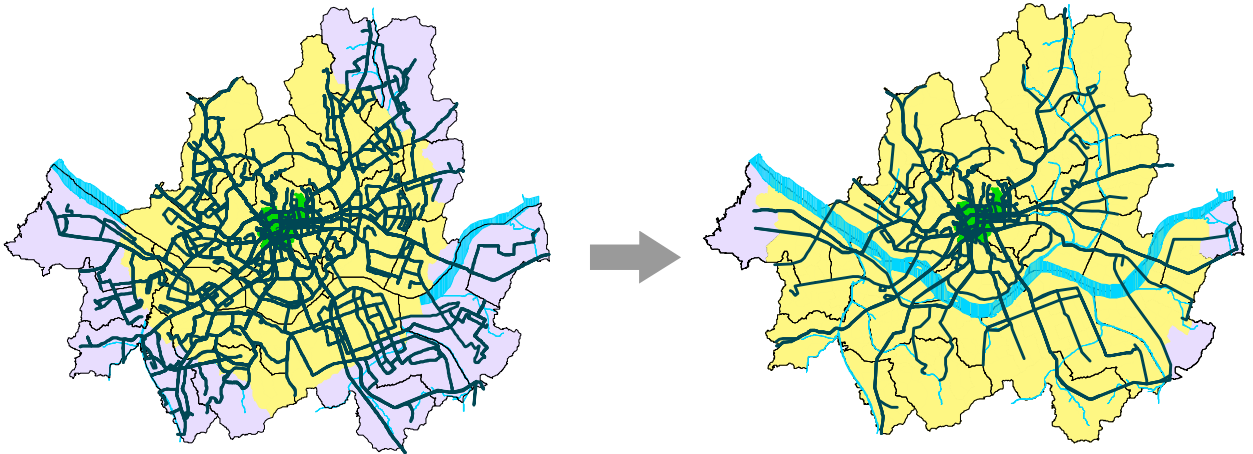


○ 간선노선망

- 기존노선 집중구간
- 도심-부도심-지역중심 연계
- 환승연계성 강화



※ 도심지역 통과노선의 변화



- 150개 노선 1,606대
- 서울시 모든 지역과 직접 연계
- 시외곽에서 굴곡 다수 발생
- 1시간내 시계부근까지 통행 못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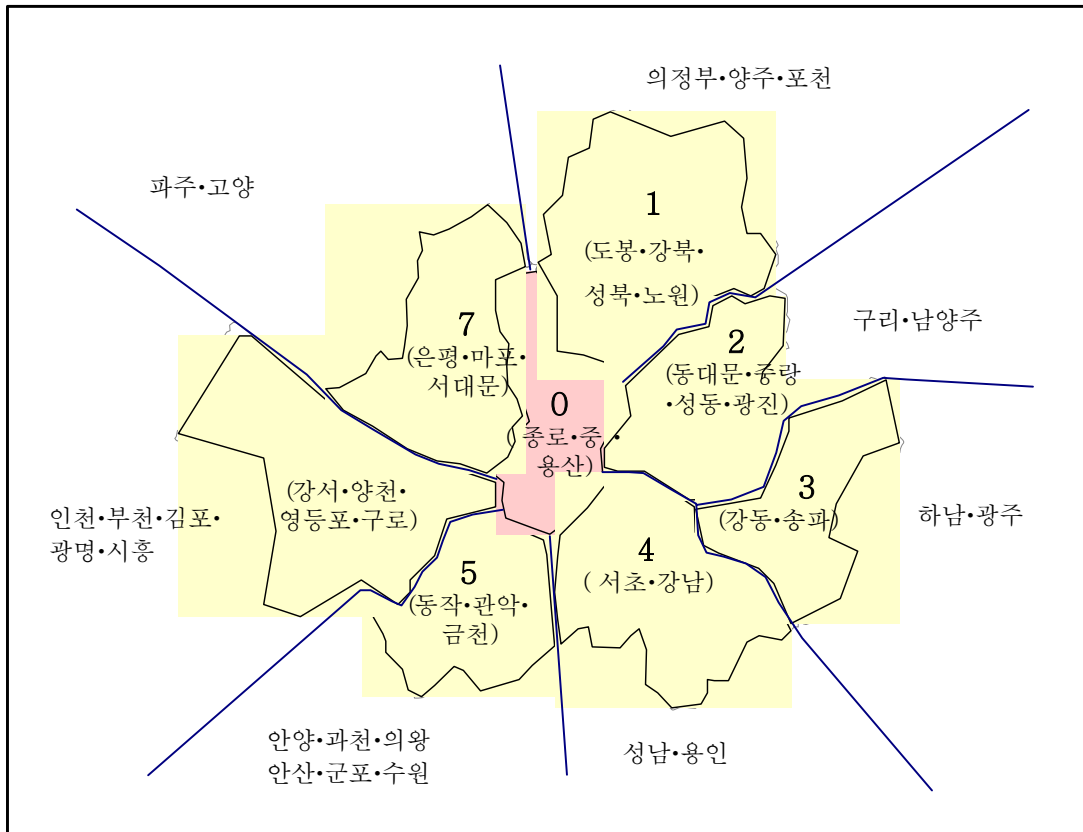
- 81개 노선 937대
- 서울시 모든 주요지점과 직접 연계
- 시외곽부근 굴곡 정비
- 1시간내 시계부근까지 통행 가능

□ 노선번호체계 개편방안

○ 출발지 · 경유지 · 목적지를 유추할 수 있는 노선번호체계 구상

	부 여 방 법	번호부여 예시
간선 버스	- 3자리 번호 - 출발지 권역 + 도착지 권역 + 1자리 일련번호	〈‘강북구 ⇔ 도심’ 운행시〉 101
지선 버스	- 1안 : 자치구 문자 + 2자리 일련번호 - 2안 : 자치구 구분번호 + 2자리 일련번호 - 3안 : 권역 구분번호 + 2자리 일련번호	〈기점이 강북구인 경우〉 · 1안 : 강북 11 · 2안 : 9-11 · 3안 : 1-11
광역 버스	- 4자리 번호 - 출발권역 + 도착권역 + 2자리 일련번호	〈‘의정부 ⇔ 도심’ 운행시〉 1001
순환 버스	- 2자리 번호 - 권역번호 + 일련번호	〈사대문안 운행시〉 01, 02

【 권역구분도 】



□ 향후계획 - 업계조정을 통한 노선안 확정

현재 시 노선개편안에 대해 버스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며, 3월 초 까지 업계와의 협의완료 후 자치구 추가 검토를 거쳐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운행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최종 결정 예정

- 간선노선 수정안 조함(업체) 의견수렴 : '04. 2.27
- 간선노선안 확정 : '04. 3. 3
- 간선노선안 확정에 따른 지선노선안 조정·보완 : '04. 3. 5
- 자치구·업계에 조정·보완 통보 : '04. 3. 6
- 시·자치구·업계 최종 합동 검토회의 : '04. 3.10~12
- 지선노선안 확정 : '04. 3.20(예정)

※ 이후 지선노선은 계속 보완 및 추가발굴(맞춤노선) 예정

10개 간선축 노선입찰 계획

- 버스운영의 공공관리를 통한 공익성 강화와 민간운영에 의한 효율성 확보
- 노선입찰 등을 통해 버스산업에 경쟁체제도입
- 버스인프라지원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통한 서비스개선 기반 구축

□ 입찰간선버스 운영

- 대상노선 : 10개 주간선축
 - 서울도로의 대동맥으로 기능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노선
- 운영관리 체제
 - 시가 공공수요에 따라 노선결정 및 배차간격 등 운행방식을 결정하고 운행실적 및 서비스만족도 등 성과평가
 - 공동운수협정 및 수입금공동관리를 통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
 - 수입금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등 재정지원
 - 교통카드시스템 및 버스사령실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 운행 관리 및 성과관리
- 운영회사 구성
 - 2~3개 간선축을 운영하는 4개 신규법인 구성, 726대
 - 도봉컨소시엄 : 2개간선축(도봉-시흥로, 도봉-경인로), 241대
 - 강동컨소시엄 : 2개간선축(망우-경인로, 천호-수색로), 149대
 - 송파컨소시엄 : 3개간선축(도봉-강남로, 자유-강남로, 송파로), 200대
 - 은평컨소시엄 : 3개간선축(도봉-공항로, 망우-수색로, 강남로), 136대

○ 운행방식

- 시간대별 승객수요에 따른 탄력운행으로 운행 효율성 제고
- 대용량 굴절버스 위주 투입으로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조절
 - 첨 두 : 굴절저상버스 + 저상버스 + 대형CNG버스
 - 비첨두 : 굴절저상버스 + 저상버스(감차운행)

□ 간선버스 운영업체 선정

○ 선정방법

-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,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
 - 객관적 예정가격 산정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
- 입찰제안서에 의해 적격성(운영능력)과 비용효과성 동시 심사

○ 평가기준

- 관리·경영능력 : 전문경영인, 관리직비율, 회계관리, 배차관리
- 버스기반 제공 : 차고지, 정비세차시설, 차량확보(굴절버스 등)
- 기사충원·복지 : 우수근로자충원, 인사관리, 처우개선, 실적관리
- 서비스·부대사업 : 친절도, 고객만족, 고객유치, 광고사업, 비용절감
- 재정 건전성 : 신규투자, 자기자본비율, 주주구성, 외부자본조달
- 비용 적합성 : 원가산출의 적합성, 서비스수준과 비용의 부합성

○ 운행계약

- 입찰 선정된 컨소시엄과 운행계약 후 법인 구성
- 주간선버스 운영을 위한 한정면허(6년) 부여
- 구체적 운행조건, 운송비용 등 협약체결

□ 향후계획

- 2004. 3. : 업체 선정 공고 및 협상대상자 선정(경영기획실)
- 2004. 4. ~ 5. : 협상 및 계약
- 2004. 7. 1. : 운행준비 및 운행개시

버스체계개편관련 조례개정 추진

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한정면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

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

제15조 (한정면허)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3.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(신설)

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.(단서 신설)

제86조의2 (재정지원) 법 제51조제1항 제7호에서 "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(신설)

□ 개정조례 :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 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

□ 조례개정 주요내용

-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통한 안정적 버스서비스 제공과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확대(안 제3조 재정지원 대상)
- 안정적 재정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근거 마련 (안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)
- 한정면허 대상을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까지 확대(안 제8조 한정면허 기본원칙)
- 노선입찰 대상을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 등으로 확대하고 견실한 업체 선정 등을 위하여 최저 보조금 입찰제 조항 폐지(안 제13조 노선입찰)
- 기타 등록제인 마을버스 관련 조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재정립 (안 제4장 신설)

□ 향후계획

- 2004. 2월말 : 건교부(행정자치부)시행규칙 개정·공포
- 2004. 2. ~ 3. : 입법방침 및 입법예고(20일간)
- 2004. 3. ~ 4. : 규제심사, 자체평가, 법제심사
- 2004. 4. : 시의회 상정 및 의결
- 2004. 5. : 조례 공포

굴절버스 도입계획

주요간선노선에 고효율 대용량의 굴절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많은 승객을 수송하여 대중교통이용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04 ~ 2006
- 사업물량 : 굴절저상버스 146대
- 소요예산 : 292억원(대당 2억원 보조)
- 추진방법
 - 운영 : 간선버스회사(입찰로 선정 예정)
 - 노 선 : 주간선노선(중앙버스전용차로 10개축 19개 노선)
 - 천호대로 및 하정로, 강남대로, 도봉·미아로, 망우·왕산로, 시흥·한강로, 수색·성산로
 - 방 법 : '04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
- 2004년 굴절버스 도입 계획
 - 도입방안
 - ▷ 간선버스회사가 굴절버스를 구매하되 시가 일정액을 보조(대당 2억원)
 - 저상버스 보조가 대당 1억원으로 굴절버스가 저상버스의 2대 용량임을 감안
 - 운행노선 및 대수
 - ▷ 대 수 : 20대
 - ▷ 운행노선 : 4개노선(도봉산↔내곡C, 상일C↔수색시계, 내곡C↔수색시계, 도봉산↔종로)
 - 굴절버스 도입 예산 : 20억원(대당 2억원 × 10대)
 - ※ 굴절버스 도입 목표 20대중 부족예산(10대분)은 저상버스 도입사업으로 추진

- 추진사항

▷ 2004년 굴절버스 입찰공고 내용

- 구매수량 : 20대
- 입찰방식 : 공개경쟁입찰(규격 및 가격 분리입찰)
- 입찰기간 : 2004.2.20 ~ 2.26
- 낙찰자 선정 : 2004년 2월 27일
- 납품기한 : 2004년 6월 20일
- 발 주 처 :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

□ 향후계획

○ 추진 일정

- 굴절저상버스 구매 계약 : 2004. 3.4
- 계약 승계 및 재계약(조합 → 간선버스회사) : 2004. 4 ~ 5
- 굴절저상버스 납품 : 2004. 6.20
- 굴절저상버스 검수 : 2004. 6.25
- 굴절저상버스 운행(간선버스 노선 운행) : 2004. 7. 1

○ 굴절버스 국고 보조 예산 확보 추진

- 굴절버스 도입시 대당 2억원 보조
- 시·국비 매칭펀드 방식에 의거 50:50 예산 확보 추진
(대당 시비 1억원, 국비 1억원)

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추진보고

□ 추진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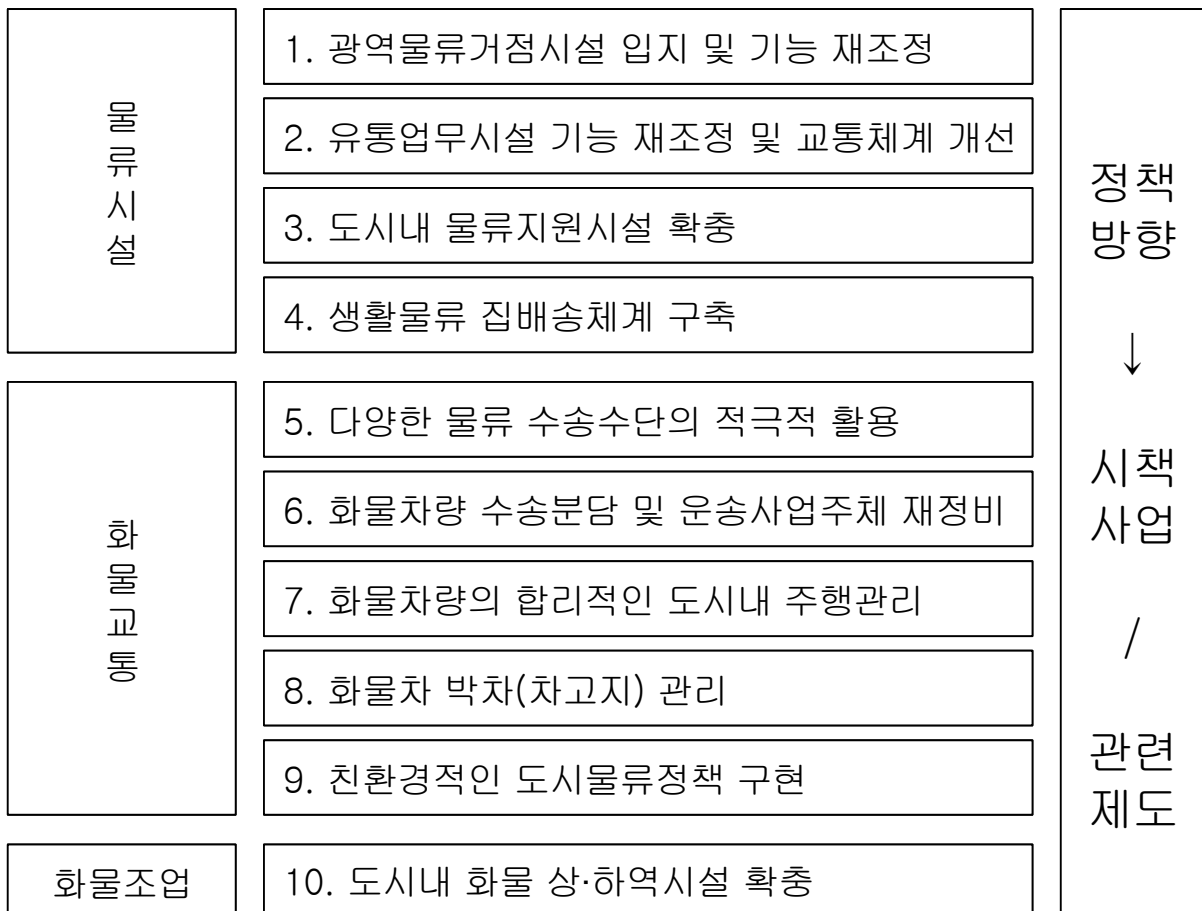
- 향후 10년간 중·장기계획 수립 및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시책사업 개발

- 단기 시책사업 선정후 연차별 시행, 장기 물류관련 제도 정비

□ 추진체계

- 물류체계 3개 분야 10개 Task 선정, Task별 시책사업 구체화
 - 사업 대상지, 법적 근거, 시행절차 및 시행계획 수립 등

○ 추진체계도



□ 주요 추진내용

○ 물류시설의 확충 및 기능개선

- ▷ 화물공영차고지 확보 및 화물터미널 기능재조정
- ▷ 도시형 공동집배송시설 건설 및 지원계획 수립
- ▷ 재래시장, 대규모 상가지역 등 유통상업지구의 개선방안 마련 등

○ 화물교통의 효율성 제고

- ▷ 도심 및 부도심권 통행제한 기준 정립
- ▷ 용달화물 콜시스템 도입 지원
- ▷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주간선도로변에 조업공간 확보
- ▷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방안
- ▷ 상업지역내 조업허가시간제 도입 등

○ 화물조업시설 확충

- ▷ 이면도로의 조업활동 지원도로 정비
- ▷ 신축 및 개축 건축물내 조업주차장 확보 의무화 등

□ 향후계획

- 용역결과에 대해 전문가, 일반시민,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2004년 5월 용역 완료

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강화

정기검사 미필,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대용 차적조회 단말기(PDA)를 통해 현장 단속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자동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주요사업내용

- 정기검사 미필,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및 무등록·대포차량 등 불법 자동차의 위반사항을 검색·관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
- 운수물류과에 휴대용 차적조회 단말기 접속 시스템 구축
- 현장 단속요원에게 휴대용 차적조회 단말기 지급 등

○ 사업기간 : 2003. 12. 19. ~ 2004. 2. 29.

○ 총사업비 : 28,075천원

□ 향후계획

- 정기검사 미필,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및 무등록·대포차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내용 정보제공
- 현장 단속시 휴대용 차적조회 단말기로 불법자동차를 즉시 조회
 -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
- 불법구조변경,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등 불법자동차를 추적·확인하여 단속강화
 - 세무부서 등 유관부서와 합동단속하여 체납차량 중 대포차량 적발

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

□ 추진목표

- 인력단속의 한계 극복
 - 일시순회단속으로 인한 지속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인력단속의 보완
- 가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차량 소통 능력 향상
 -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지점 개선
- 상시단속시스템 구현으로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
 -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관제 및 불법주정차 근절
- 비용절감형 자동단속체계 구축 지향
 - 위반적발, 통지서발급, 과태료부과 및 체납관리 무인자동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04.2. ~ 2004.12.
- 소요예산 : 1,031백만원
 - 차치구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예산 : 1,031백만원
- 사업범위 : 도심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
- 추진방법
 - 도심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중 단속취약 지점을 선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 현장 설치
 - 무인단속상황실을 구축하여 실시간 현장 감시, 단속 및 견인 조치
 - ※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시스템 도입 근거법 개정·공포
(도로교통법 제71조의3 제2항, 제72조3 제1항 시행일 2004.7.1)

□ 향후계획

○ 시범사업 실시

- 기 간 : '04. 2. ~ '04. 7.
- 설치구간 : 도심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의 가로변차로
-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
 - 시스템 설계 및 발주 : '04. 2. ~ 3.
 - 무인단속카메라 현장설치 : '04. 4. ~ 6.
 - 무인단속상황실 운영 : '04. 7. ~ 12.(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수동운영)
 - 무인자동단속상황실 운영 : '04. 12. ~

○ 단계별 확대설치

- 1단계
 - 기 간 : '04. 8. ~ '04. 12.
 - 설치구간 : 시범설치 대상구간 연장
 - 운영방법 개선 : 무인단속상황실 운영을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수동운영방법에서 무인자동단속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동운영으로 개선
- 2단계
 - 기 간 : '05. 1. ~ '05. 6.
 - 설치구간 : 가로변 및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등
- 3단계
 - 기 간 : '05. 7. ~ '05. 12.
 - 설치구간 : 간선버스 노선구간 및 상습주정차 지역

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

- 2차5개년계획 -

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로 교통난 완화, 환경오염의 감소, 에너지절약, 시민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○ 자전거 이용 정책

- 청계천복원 및 도심교통체계개편 등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
- 지하철역 등과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성화
- 레저 목적의 수요충족을 위해 다양한 테마 도로정비
 - 하천 둔치의 자전거도로 접근성 및 인근도시와의 연계성 강화
- 뉴타운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망 구축

○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

- 양적 확충보다는 연계성 위주의 질적수준 향상
- 자전거 이용잠재력이 높은 지역, 노선에 대한 차별화된 정비
- 대중교통 연계교통수단으로 활성화를 위해 환승주차장, 환승센터 등에 자전거보관대 확대 설치

□ 그간 추진실적 분석('98~'02, 1차5개년계획)

- 자전거도로(554km) : 양적위주로 설치, 단절구간 및 불법주정차, 적치물 등으로 이용불편, 한강남북간 단절 등으로 민원이 증가추세
- 자전거보관대(41,511대) : 전체 70%는 지하철역, 학교주변에 설치, 통근·통학수요가 증가추세, 무단방치자전거의 증가로 관리강화 필요
- 자전거대여소(무료 3개소, 유료 15개소) : 한강변과 여의도공원의 이용 시민 증가, 잠실역 출퇴근시스템 시범실시로 확대설치 필요

□ 사업개요

- 추진기간 : 2003년 ~ 2007년
- 총사업비 : 72,360백만원(시비:43,288백만원, 구비:29,072백만원)
- 추진내용
 -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
 - 자전거도로 신설(214km), 자전거보관대 설치(53,273대)
 - 자전거무료대여소(22개소), 자전거경사로(10개소)설치
 -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
 - 도심교통체계개편시 4대문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 구축
 - 도심과 연결되는 상징적인 자전거도로망 구축[강남·강북·하천]
 - 강남북 연계를 위한 주요 교량상 자전거경사로 설치 등
 -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(집중점검 및 단속) 강화
 - 시 점검반 운영, 자치구 실적관리

□ 세부추진계획

- 도심 연결 자전거도로 체계구축
 - 도심교통체계개편시 4대문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 구축('05.9월)
 - 도심과 연결되는 상징적인 자전거도로망 구축('07.12월)
 - 강남노선 : 청계산↔경부고속부채도로↔한남로↔시청앞광장
 - 강북노선 : 은평뉴타운↔통일로↔새문안길↔광화문↔시청앞광장
 - 하천노선 : 한강,주요지천↔복원되는 청계천↔시청앞광장
- 강과 산의 연계구축
 - 한강과 남산간 연결('04.12월)
 - 구 간 : 한강↔한남로↔소월길·장충단길↔남산공원(용산구)
 - 한강과 청계산 연결('07.12월)
 - 구 간 : 청계산↔경부고속부채도로↔한강 (서초구)

- 한강교량 자전거경사로 설치('06.12월)
 - 설치계획 : 한남대교외 6개교량 자전거경사로 15개소 설치
 - 한남대교 : 북단 엘리베이터, 남단 경사로, 하류측 보도확폭(2→3m)

- 잠수교 자전거도로 설치('04.6월)
 - 목 적 : 한강 남북 자전거도로 연계를 통한 시민 편의증진
 - 설치계획 : 차로폭 조정(4차선)으로 자전거도로 확보(2m이상)
 - 안전휀스 보강(40cm→1.2m) 등
 - ※ 잠수교 보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(시경철청 협의 등)

- 자전거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활성화 추진
 - 목 적 : 자전거 이용여건이 좋고 활성화 의지가 있는 자치구를 선정하여
 - 자전거이용생활화의 모범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
 - 방 법 :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, 예산적극지원
 - 대 상 : 양천구(“Image Making”), 송파구(자전거문화팀 신설)

- 수도권과의 자전거도로 연계방안
 - 한강과 주요지천을 통한 수도권도시와 자전거도로 연결
 - 중랑천(의정부시), 안양천(안양,군포,광명,의왕시), 양재천(과천시), 강변북로(구리시)
 - 광진교↔구리시계간 자전거전용교량 설치 타당성 용역추진 등

- 서울시 뉴타운 개발지역내 자전거도로망 구축
 - 대 상 : 은평, 길음, 왕십리뉴타운지역외 12개 추가지정 지역
 - 추진방안
 - 지구내 내부도로 자전거도로망 구축(폭 2m이상 확보)
 - 주변 간선도로와 연계를 통한 통근,통학,업무 등 네트워크 구축
 - 지하철역, 학교, 공원 등에 자전거보관대 확충

○ 지하철역 중심의 자전거도로망 구축

- 목 적 : 지역내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
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, 지역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도모
- 추진계획
 - 지하철역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
 - '04년부터 161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,
이용도가 높은 곳부터 연차별 추진

○ 자전거 지하철 탑승허용 추진

- 추진계획
 - 지하철 자전거전용차량 운영('05.6월~12월) : 비첨두시(10시~15시)
시범운영 [지하철2호선] 모니터링 후 지하철 전노선에 확대시행 검토
('06년 이후)
 - 자전거 전용 게이트 설치('05.6월)

○ 환승시설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

- 추진계획
 - 환승시설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
 - 환승시설에 자전거보관대 확충 : 기존 환승주차장(16개소), 환승센터 계획(13개소)
- ※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%이상 자전거보관시설 설치 의무화

○ 자전거무료대여소 확충계획

- 추진계획
 - 매년 5개소씩 총 20개소 확충 : 레저와 출퇴근 목적으로 주요하천과
지하철에 확대설치
- ※ 무료대여소(5개소): 흥제천,불광천,잠실역,거여·마천,가락·문정

□ 향후추진계획

- '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정비2차5개년계획 (2003~2007)'에
의거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

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선사업

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체계개편과 아울러 기존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, 점선의 실선화 및 유색포장 등을 통하여 버스의 정시성과 통행속도 향상 등 버스 우선처리시스템 강화로 대중교통우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버스전용차로 구간내 실선 확대
- 버스정류소 정차구획선 설치
-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유색포장 시행

□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

1. 버스전용차로 구간내 실선 확대

- 사업내용
 - 추진기간 : '04. 1. ~ 6.
 - 추진내용
 - 버스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반차량 유입 점선구간 실선화
 - 세가로 진출부에 버스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완 설치
 - 사업비 : 약 2,017백만원
- 추진일정
 - '04. 2. : 현장조사, 분석 및 도면 작업
 - '04. 3. : 정비계획 수립, 자문회의
 - '04. 4. ~ 6. :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

○ 조치사항

- 가감속 기능의 점선구간이 없어짐에 따라 우회전 진출차량으로 인한 본선 교통지체 및 일반차량 이용자의 민원 예상됨
- 따라서, 공사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홍보실시 및 공사완료 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며, 계도기간 후 강력단속

2. 버스정류소 정차구획선 설치

○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'04. 1. ~ 6.
- 추진내용
 - 승객 승하차 안전 확보 및 정류소 질서 확립을 위한 정차구획선 설치
 - 버스회사 및 운전자 행정지도 및 계도로 운전문화 개선
- 사업비 : 약 369백만원

○ 추진일정

- '04. 2. : 정류소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, 관련부서 협의
- '04. 3. : 정비계획 수립 및 서울지방경찰청 협의
- '04. 5. ~ 6. :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

○ 조치사항

- 경찰측과 협의('03. 7. 18)결과 베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류소의 경우 정차구획선 설치에 부정적이나 적극 협의하여 설치
-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버스정류소 통폐합 및 이설계획 반영 추진

3.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유색포장 시행

○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'04.3. ~ 6.(단계적 포장계획 1순위 사업)
- 추진방법
 - 유색포장 방안 및 시방침 결정 (교통국)
 - 공사시행 (건설안전본부)
- 총사업비 : 약 24,636백만원 (규모 L=178.2km, A=6,237a)
 - 사업비 조달 : 연도별 포장계획에 의거 공사부서에서 자체편성

○ 추진현황

- '04.1. : 교통대책회의시 유색포장 검토지시
- '04.2. : 유색포장 계획 방침 확정 후 건설안전본부 통보
- '04.3.~ : 건설안전본부에서 포장계획에 의거 단계적 시행

○ 포장시행계획

- 색 상 :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동일 색상
- 우선순위 : 전일제 구간을 우선원칙으로 하되, 포장경과년수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결정
- 단계적 포장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 순위	2 순위	3 순위
규 모	L=178.2km A=6,237a	L=51.0km A=1,785a	L=66.41km A=2,324a	L=60.8km A=2,128a
사업비	24,636	7,050	9,180	8,406
시 기		'04.6.20 까지	'04말까지	'05년도
재 원	일반회계	'04 포장예산	'04 추경	'05 예산